

파주시통·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·의결된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장학금 지급정지의 사유를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완화함으로써 통·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리장의 자격요건에 저촉되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조항 삭제. (안 제8조제1항제1호)
- 나.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확인이 불가능한 애매모호한 조항 삭제. (안 제8조제1항제4호)
- 다.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“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”를 “장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은 때”로 판단 기준 구체화. (안 제8조제1항제3호)

□ 검토의견

-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에 의거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

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

제2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사항
2. 규제의 신설·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3. 규제의 등록·공표에 관한 사항
4.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5.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